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2-08

## 서 울 행 정 법 원

### 제 6 부

### 판 결

사 건 2022구합75082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  
피 고 ○○특별시 ○○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김○○  
변 론 종 결 2023. 5. 19.  
판 결 선 고 2023. 7. 14.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12. 15. 원고에게 한, 별지1 부동산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취득세 401,977,320원, 농어촌특별세 9,280,660원, 지방교육세



55,585,090원의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 및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취득세 가산세 22,147,920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895,700원, 지방교육세 가산세 5,374,18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sup>1)</sup>.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7. 커피 가공 제조 및 판매업, 커피 연구개발업, 제빵, 제과류 제조 및 판매업, 식·음료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6. 5. 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 2019년말 기준 원고의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 수는 46개, 직영점은 2개이다.

나.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인 B은 원고 설립 이전인 2008. 3. 5. 'A'라는 상호로 ○○○○구 C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커피전문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후 동일 상호로 여러 분점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31. 제2부동산을 취득하고, 같은 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고 75%를 감면받아 그 무렵 취득세 등으로 53,58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1) 원고는 2023. 5.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도, 제1부동산 관련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각 가산세 포함)"을 기재하지 않았고, 제2부동산 관련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취득세 가산세'만을 기재하고 나머지는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라고만 기재하였다. 그런데 ① 제1부동산에 관한 과세예고통지(갑 제9호증) 기재의 세부 내역에 따르면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각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② 제2부동산 관련 부과처분 부분도 그 과세예고통지(갑 제9호증) 기재에 따르면 각 세목별 가산세만이 부과된 것이 확인되고, 원고 역시 이 부분까지 다투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취지에 '각 가산세 포함', '가산세'를 각 추가하는 것으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18. 7. 17.자로 제2부동산을 매도하여 2018. 9. 20. 소외 D,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피고는 2019. 8. 20.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1. 창업벤처기업의 직접사용 목적으로 감면신고 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최초사용일로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지방세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2019. 10. 10. 제2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 202,855,0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9. 12. 9.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특별시장은 2020. 1.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위 취득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8. 12. 11. 제1부동산을 취득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고 75%를 감면받아 그 무렵 취득세 등 122,2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이후 제1부동산을 2020. 4. 13. 매도하고 2020. 7. 1.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이에 피고는, 원고의 사업개시가 당초 대표이사 B이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후 사업을 확장하고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 따라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2020. 9. 11. ①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창업배제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등을 사유로 한 취득세 등 465,288,4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②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제2부동산 취득일 이후인 2016. 1. 1.을 기산일로 하여 재산정한 가산세와 기존 2019. 10. 10.자 부과처분(추징)과의 차액인 가산세 28,417,80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각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특별시장은 2020. 1. 14. 이를 불채택하였다.

아. 이에 피고는 2020. 12. 15. 아래 표와 같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 부과·고지를 하였다(이하 제1부동산에 관한 부과처분을 '제1처분'이라 하고, 제2부동산에 관한 부과처분을 '제2처분'이라 하며,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구분<br>(과세표준)              | 세목         | 본세          | 가산세        |            | 합계          | 비고                                      |
|---------------------------|------------|-------------|------------|------------|-------------|-----------------------------------------|
|                           |            |             | 신고불성실      | 납부불성실      |             |                                         |
| 제2부동산<br>(1,710,000,000원) | 취득세        | -           | -          | 22,147,920 | 22,147,920  | 제2처분 :<br>기추징<br>금액과의<br>차액 부과          |
|                           | 농어촌<br>특별세 | -           | -          | 895,700    | 895,700     |                                         |
|                           | 지방<br>교육세  | -           | -          | 5,374,180  | 5,374,180   |                                         |
|                           | 소계         | -           | -          | 28,417,800 | 28,417,800  |                                         |
| 제1부동산<br>(3,926,250,000원) | 취득세        | 314,100,000 | 31,410,000 | 56,467,320 | 401,977,320 | 제1처분 :<br>감면사유<br>해당되지<br>않음으로<br>인한 추징 |
|                           | 농어촌<br>특별세 | 7,852,500   | -          | 1,428,160  | 9,280,660   |                                         |
|                           | 지방<br>교육세  | 47,115,000  | -          | 8,470,090  | 55,585,090  |                                         |
|                           | 소계         | 369,067,500 | 31,410,000 | 66,365,570 | 466,843,070 |                                         |
| 합계                        |            | 369,067,500 | 31,410,000 | 94,783,370 | 495,260,870 |                                         |

자.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3.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4. 28.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9, 10호증, 을 제1, 3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주된 사업은 식료품 제조업 등으로 B이 원고 설립 이전에 하였던 커피 전문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업이므로 '창업'에 해당한다. 원고는 G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다음 분기의 제조업 매출이 총 매출액의 67.5%에 달하므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중소기업창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르더라도 '창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2호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2016. 5. 19. 적법 절차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 법인에 해당하고, 적법하게 취득세 등 세금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이며, 피고도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취득세 등을 감면한 것인데, 벤처기업확인 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원고 사업이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를 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제1처분 사유로 부동산의 직접 사용 기한이 2년 이내라는 점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사실

1) B은 2008. 3. 5. ○○ ○○구 C을 사업소재지로 하여 'A'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였다가 2013. 12. 10. 폐업하였고, 2011. 6. 21. 동일상호로 ○○ ○○구 H,



1층을 사업소재지로 하여 업태 음식, 종목 커피로 하여 음식점을 개업하였다가 2014. 3. 16. 폐업하였으며, 2014. 8. 1. ○○ ○○구 I, 1층 일부를 소재지로 하여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였다가 2015. 9. 1. 폐업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다수의 커피전문점을 개업·운영해왔다.

| 연번 | 구분 | 상 호 | 업 종                        | 소재지 | 08 | 0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 1  | 개인 |     | 음식/커피전문점                   |     |    |    |    |    |    |    |    |    |    |    |    |    |    |
| 2  |    |     | 음식/커피전문점                   |     |    |    |    |    |    |    |    |    |    |    |    |    |    |
| 3  |    |     | 음식/커피전문점                   |     |    |    |    |    |    |    |    |    |    |    |    |    |    |
| 4  |    |     | 음식/커피전문점                   |     |    |    |    |    |    |    |    |    |    |    |    |    |    |
| 5  |    |     | 음식/커피전문점                   |     |    |    |    |    |    |    |    |    |    |    |    |    |    |
| 6  |    |     | 음식/커피전문점                   |     |    |    |    |    |    |    |    |    |    |    |    |    |    |
| 7  |    |     | 도매·건설/<br>커피재료,인테리어        |     |    |    |    |    |    |    |    |    |    |    |    |    |    |
| 8  |    |     | 음식/커피전문점                   |     |    |    |    |    |    |    |    |    |    |    |    |    |    |
| 9  |    |     | 음식점업/커피                    |     |    |    |    |    |    |    |    |    |    |    |    |    |    |
| 10 |    |     | 휴게음식점/카페                   |     |    |    |    |    |    |    |    |    |    |    |    |    |    |
| 11 |    |     | 음식/휴게음식점                   |     |    |    |    |    |    |    |    |    |    |    |    |    | 계속 |
| 12 | 법인 |     | 제조·도매/<br>커피가공업,음료도매       |     |    |    |    |    |    |    |    |    |    |    |    |    | 계속 |
| 13 |    |     | 음식/커피전문점                   |     |    |    |    |    |    |    |    |    |    |    |    |    |    |
| 14 |    |     | 제조·도매,휴게음식점/<br>재료,커피재료,카페 |     |    |    |    |    |    |    |    |    |    |    |    |    | 계속 |
| 15 |    |     | 음식점업/커피                    |     |    |    |    |    |    |    |    |    |    |    |    |    |    |
| 16 |    |     | 음식점업/커피숍                   |     |    |    |    |    |    |    |    |    |    |    |    |    |    |
| 17 |    |     | 도매/커피 및 재료                 |     |    |    |    |    |    |    |    |    |    |    |    |    |    |
| 18 |    |     | 음식/카페                      |     |    |    |    |    |    |    |    |    |    |    |    |    | 계속 |
| 19 |    |     | 음식/커피숍                     |     |    |    |    |    |    |    |    |    |    |    |    |    |    |
| 20 |    |     | 음식/카페                      |     |    |    |    |    |    |    |    |    |    |    |    |    | 계속 |
| 21 |    |     | 휴게음식점/카페                   |     |    |    |    |    |    |    |    |    |    |    |    |    | 계속 |
| 22 |    |     | 휴게음식점/카페                   |     |    |    |    |    |    |    |    |    |    |    |    |    |    |
| 23 |    |     | 음식점업<br>/카페, 커피            |     |    |    |    |    |    |    |    |    |    |    |    |    | 계속 |

2) B은 2015. 4. 7. 원고와 같은 소재지(○○ ○○구 J)에 상호를 'G', 업태를 제조



업, 업종을 곡물 혼합 분말 및 반죽 제조업, 빵류 제조업, 커피 가공업 등으로 하여 법인 사업자등록을 하기도 하였다.

3) 원고가 설립된 해인 2014년말 기준 원고의 주식은 B의 동생 K이 전량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5년에 B이 이를 전부 양수하였고, 이후 2017년말 기준 85%, 2018년말 기준 85%, 2019년 및 2020년말 기준 90%를 보유해오고 있다.

4) 원고 홈페이지에는 'A 히스토리(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항목으로 원고의 연혁을 소개하고 있는데, 2008년 브랜드 런칭 및 제조공장 설립, 2009년 수제케익 제조공정시설 완비, 2010년 직영점 4개 매장 운영, 2013년 프랜차이즈사업 시작, 제조공장 확장이전(L 공장), 2014년 원고 설립 가맹사업 시작, 2015년 원고 법인지사설립, 본사 제조공장 확장이전, 커피유통사업 시작, 2016년 M 사옥 건축, 제조공장 확충(케이크/제빵), 커피 유통사업 확충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을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원고의 사업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감면 적용을 받는 '창업'에 해당하는지

### 가) 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은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고,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기업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





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본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 감면 혜택을 주려는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11549 판결 취지 등 참조).

이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과 제6항의 형식, 문언 및 입법취지와 '사업 따위를 처음으로 이루어 시작함'이라는 '창업'의 사전적 의미(중소기업창업법 제2조 제1호 역시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새로운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 설립되었더라도 해당 기업 등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하던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에 불과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위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법인격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의 연속성·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설립된 기업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 사업





의 확장이나 업종 추가 등에 불과한지는 해당 기업의 설립 경위, 기존에 사업을 영위 하던 개인 또는 법인과 신설 기업의 출자자 구성, 전자가 후자의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정도, 양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유사성과 관련성, 양자 사이의 거래 현황과 규모 및 인적·물적 설비를 공유하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결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2호, 제4호의 해석에 있어 중요한 사항은 '사업' 자체가 새로운 것인지 여부라 할 것이다.

한편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2항에서 정한 감면대상이라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누1270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두7830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사업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이 적용되는 '창업'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는 위 규정이 적용되는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B은 2008. 3. 5. 'A'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시작한 후 다수의 분점을 추가로 개설·운영하여 오다가 원고를 설립한 후 순차적으로 개인사업을 폐업하였다. B은 원고가 설립된 다음 해인 2015년 원고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2020년말 기준 90%를 보유하는 등 원고의 대주주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② B의 종전 개인사업체와 원고의 상호는 동일하고, 개인사업체의 '커피전문점'과 원고의 '커피 가공 제조 및 판매업'도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 또한 원고가 이후



추가한 'G' 사업체의 업종에도 커피가공업이 포함되어 있어 그 사업 내용이 유사하다.

③ 원고의 홈페이지 히스토리에는 원고 설립 이전 기간인 2008년부터 2013년 까지 기간에 관하여 B의 기존 개인 커피전문점 사업 내용을 기재하여 B의 개인사업이 었던 커피전문점이 원고 사업의 기반이 된 것임을 표시하고 있는바, 사실상 해당사업 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이어 한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B의 개인사업은 음식업이었을 뿐 제조업(제과·제빵)을 영위한 적 이 없고, 원고는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서로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 나 원고의 홈페이지 기재에 따르면 B의 기존 개인사업(커피전문점)에서 커피 로스팅 외에도 수제케이크 등의 제조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제과·제빵 제조업 역시 기존 개인사업과 연속성이 있다고 보일 뿐이다.

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일"을 대통령령에 위임하 고 있고, 그에 따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창업하는 경 우 설립등기일을 창업일로 보고 있으므로, 설립일 당시의 사정을 기초로 해당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창업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4. 11. 7. 커피 제과·제빵 제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B의 개인사업체 와 무관하게 새롭게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당시 제조활동 등에 사용할 기계장치 등을 구입하였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갑 제 13호증은 원고 설립 후의 구매내역들인바, 이로써 원고가 B의 기존 개인사업과 완전히 구분되는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⑥ 원고 소재지인 ○○ ○○구 N동에 있던 B 개인사업체들은 2014년 전후로 폐업하였다. 원고는 B의 개인사업 당시와 원고 설립 후에 해당 자산이 전혀 다르다는



취지로 각 재무상태표(갑 제14호증)를 제출하였으나, 개인사업 재무상태표의 경우 원고 소재지 인근의 개인사업체들이 아니라 ○○ ○○구 및 ○○ ○○구 소재 매장 2개에 대한 것으로서 위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설립이 B의 종전 개인사업과 무관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제2부동산 취득 당시 적용되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 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4항은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를 같은 법 제100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에 같은 법 제100조 제3항이 업종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같은 조 제6항은 위 항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벤처기업법에 따른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각 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업이 아님을 명시하여 '창업'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었다. 그 뒤 2016. 12. 27. 신설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역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벤처기업법에 따른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더라도 각 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업이 아님을 재차 명시하고 있다. 즉 제2부동산 취득 당시 시행 중이던 구법에 의하더라도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사실만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의 감면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한바, 그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 2) 제1처분 관련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3호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의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8. 1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년이 지나기 전인 2020. 7. 1. 소외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를 매각하였는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7항 제3호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에 대한 추정 사유가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에서도 제1처분은 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직접사용 2년 미달' 사유는 제1처분 당시 피고가 제시하였던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제1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정당한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의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1처분의 과세 예고통지를 하면서 추정사유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 후 사업을 확장하고 다른 업종을 추가하였으므로 창업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 감면요건에 부적정하다고 판단함'이라고만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제1부동산을 취득 2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사실은 제1처분 당시에도 명백한 사실로서 추정사유에 해당하였는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제1처분의 사유로 이를 주장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3)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참조).

####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자체가 벤처기업법에 따른 창업벤처기업이라 하더라도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벤처기업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의 감면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 ② 원고가 제1, 2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을 할 당시 원고의 영업등록증,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을 뿐 B의 개인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그와 관련한 창업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별도로 문의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가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것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신뢰가 부여되었다거나 그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4)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박○○

            판사      강○○





## 별지1

### 부동산 목록

#### 1. 가. ○○시 ○○구 O 대 557.4m<sup>2</sup>

##### 나. 위 지상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지1 170.58m<sup>2</sup>

1층 262.59m<sup>2</sup>

2층 287.6m<sup>2</sup>

3층 230.43m<sup>2</sup>

4층 187.53m<sup>2</sup>

#### 2. 가. ○○시 ○○구 P 대 294m<sup>2</sup>

##### 나. 위 지상건물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 경량철골조

지붕4층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1층 131.37m<sup>2</sup>

2층 131.37m<sup>2</sup>

3층 131.37m<sup>2</sup>

4층 107.66m<sup>2</sup>

지하층 63.42m<sup>2</sup>. 끝.



## 별지2

### 관계 법령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이하 "벤처기업확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이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창업일은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로 한다.



- ②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사업용 재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2016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 대상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100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다만, 제100조제3항제20호의 업종 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장을 경영하는 기업과 같은 조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⑤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통합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출판업



5.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6. 방송업
  7. 전기통신업
  8.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9.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0. 연구개발업
  11. 광고업
  12. 전문디자인업
  13. 전시 및 행사대행업
  14.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19.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1.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2.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4.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2016. 12. 27.)**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분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제58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받은 자가 같은 항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 법 시행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의3제8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 ① 법 제58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
- 끝.